

현재 지역을 중앙일보 홈으로 설정

통합 HOME | 지역별 중앙일보

ASK미국 | 미국Talk | 전문가상담백과 | 이민생활사전

통합검색

AD ZONE

GROW YOUR FUTURE WITH VERIZON WIRELESS

CLOSE

LOCATION LA중앙일보 > 뉴스 > 이민/비자

이메일 | 프린트 | 기사목록 | -가 | +가 | 내 블로그에 담기

- 이민·비자
- 이민/비자
- 본 기사에 대한 댓글
- 0 개 -

[이민] 밀입국 친구의 아이 입양하려는데 [LA중앙일보]

이동찬 변호사

기사입력: 07.18.08 18:39

▶문= 시민권자입니다. 밀입국한 친구의 14살 된 아이를 입양하면 아이의 신분을 살릴 수 있는지요?

▶답= 이민법에 의하면 시민권자의 자녀는 직계가족이므로 빨리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입양인 경우에는 다릅니다. 특히 고아가 아닌 아이를 입양했을 때는 영주권 신청까지 2~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. 귀하처럼 시민권자가 입양할 경우 그 아이는 21세 미만이어야 하고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이 종결되어야 합니다. 그리고 2년동안 양부모의 합법적인 양육권 아래서 생활해야 합니다.

귀하께서 지금 입양절차를 시작하면 16세 이전에 입양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2년동안 양부모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입양한 후 법원으로 부터 양육권을 부여 받고 2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.

그리고 또다른 문제는 그 아이가 밀입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. 밀입국을 했을 경우 아무리 직계 가족이라도 245i 조항(불법체류자에 대한 구제법안) 수혜자가 아니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그러므로 입양된 자녀는 가족이민 청원서가 승인이 된 후 한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와야 합니다. 특히 180일 이상 불법체류를 했을 경우 3년 동안 미국에 들어 올 수 없고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했을 경우 10년 동안 미국에 들어 올 수 없습니다. 다행히 자녀가 18세가 된 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.

귀하의 경우 아이가 18세 이전에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. 그러나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기때문에 신속히 일을 진행하실 것을 조언합니다.

문의: (213)291-9980

건국 최선



JBC



200 총

제 8

베스

- 한인
- 로또
- 미의
- 7000
- 정선
- "달님
- 당신
- '고가

속보

베스

- ▶ '닭농장, 은퇴사업으로 최고'
- ▶ '마일리지 유효기간' 없는 항공사도 있다?
- ▶ [미국Talk] 한국어 안배웠으면 큰일날뻔 했습니다

- ▶ 달랑 18일 일하고 158억원 번 CEO
- ▶ 과도한 스트레스 받을때 먹으면 좋은 '약'
- ▶ [Blog] 성공의 비밀, 자신감을 갖는 방법

뉴스홈으로 쭈맨위로

이메일 | 프린트 | 기사목록 | 내 블로그에 담기



'맛' 좀 보실래요?



검은 것이 모두 파리떼



말할 수 없는 비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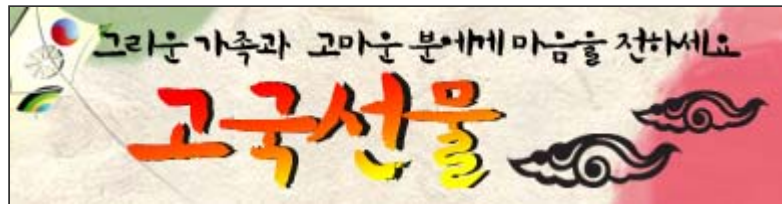
'폴 뉴먼' 별세

Google ADVERTISEMENT

박조셉 이민전문 변호사 www.jpsquire.com
O-1, H-1B, E-2, J-1 Waiver 가족/취업이민, 추방방어, 1대1 상담

남미 유럽 영주권 초단기간 www.SouthAmericaVisa.com
최단 일주일, 저렴한 비용, 시민권급행, 편리한 비방문국내수속, 사업취업이민

박명석 이민 변호사 www.eminlawyer.com
투자이민, 취업이민, 종교이민, 미국비자, 이민법 전문 변호사 상담.



나도 한마디...!

• 바른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하여 무례한 행위를 금합니다.

감정표현:

글올리기



- 1 미국
- 2 볼티
- 3 초기

코리아터



- 구제
- 그래
- 애니



- 무비
- 이민
- food

전문



- 믿을
- LA사
- 세상

YELLOW PAGE

검색

옐로우페이지 광고상품안내

없는것이 없다!
초고속
다운로드

아이비은행
15만불 무담보

키친,마루,
리모델링
리젠시디자인

No.1결혼정보
듀오

스스로 학습
재능교육



